

베트남 기업구조조정관련 세제

April, 2023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룡 대표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HP: www.seouvietnam.com



목차

기업의 life cycle 별 사업구조조정방안	3
사업확장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4
사업유지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7
사업유지시 구조조정방안의 비교	11
사업종결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12
사업확장시 구조조정 의사결정방안	15
사업유지시 구조조정 의사결정방안	16
사업종결시 구조조정 의사결정방안	17
세무조사 이슈	18
조세불복절차	21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소개	22

기업의 life cycle 별 구조조정방안

사업확장

모기업투자 신설자회사 설립

- 모기업의 신규자금유입 투자

기존자회사의 별도지점설립

- 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지점 설립

기존자회사가 신설 손자회사 설립

- 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손자회사
설립

사업유지

개별자산매각

사업양도/프로젝트양도

현물출자

분할

합병

사업종결

지분양도

- 지분매각을 통한 exit방안

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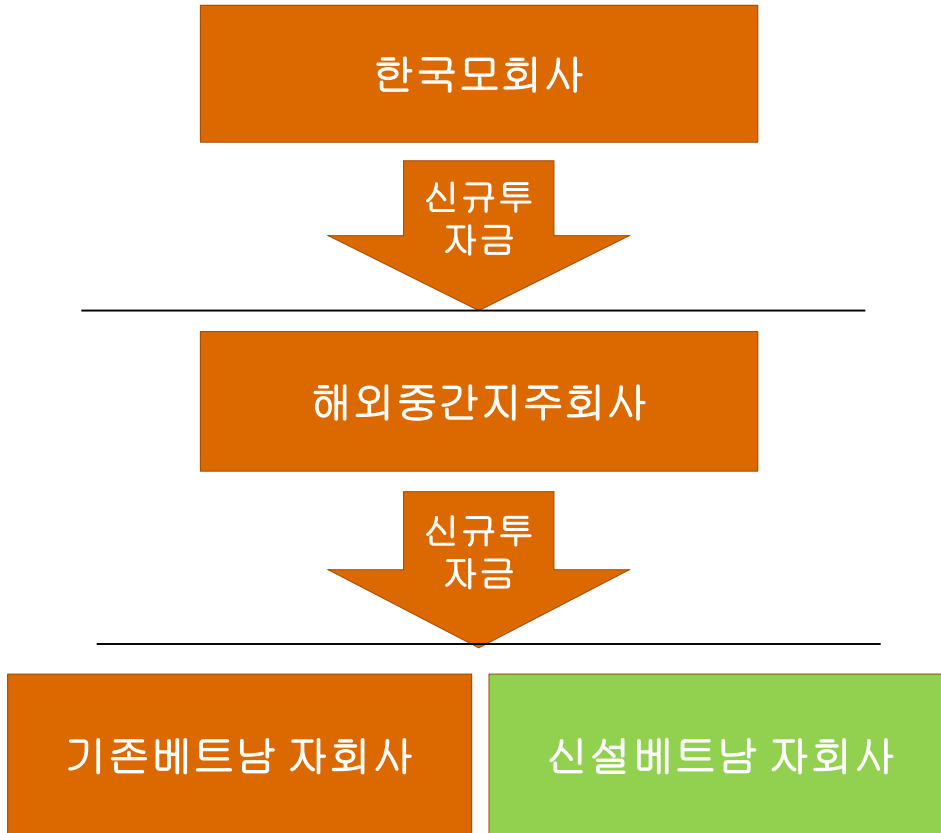
- 기업해산을 통한 회사종결

휴업

- 영업활동 중단을 위한
휴업신청

사업확장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해외모기업투자 신설자회사 설립



- 신규사업진출의 책임구분
- 신규세제혜택 적용의 장점
- 기존자회사와 구분지배가능
- 기존자회사의 배당여부와 무관한 독자 신설자회사의 배당결의 가능.

사업확장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기존자회사 소유 손자회사 설립



- 기존베트남 자회사의 활용
- 신설손자회사의 신규세제혜택 가능
- 손자회사의 지배구조는 베트남 자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배당 및 의사결정포함)
- 기존베트남 자회사의 현금흐름 보충 필요
- 기존베트남 자회사의 자본금 증자요구

사업확장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기존자회사의 별도지점설립

한국모회사

신규투
자금

해외중간지주회사

신규투
자금

기존베트남자회사

기존본점

신설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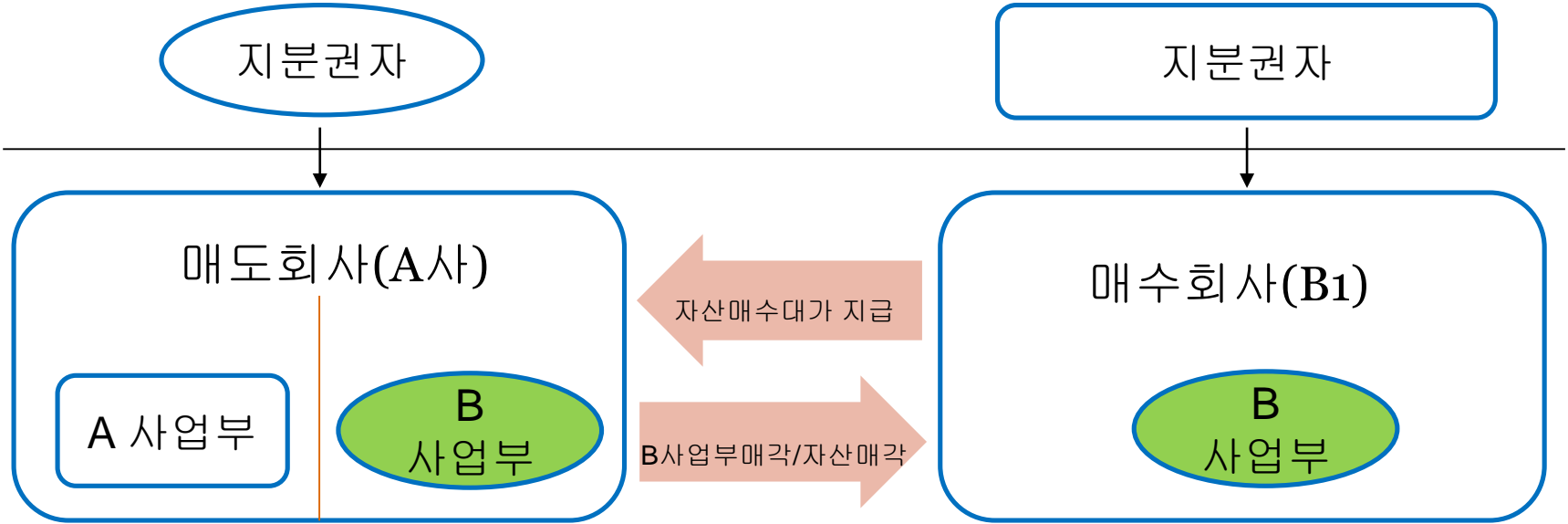
- 기존베트남 자회사의 활용
- 자원 및 인원의 중복투자 최소화
- 신설사업지점의 사업확장조건 충족시 신규 법인세 혜택 적용

■ 법인세제 혜택을 위한 사업확장조건

- 사업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고정자산의 신규 취득가액이 200억 동을 초과하거나, 100억 동을 초과하면서 경제낙후지역에 위치한 경우 또는,
- 사업확장전 기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대비 사업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고정자산의 신규 취득가액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 설비의 설계용량이 투자허가서나 techno-economic report상의 사업확정전과 비교하여 최소 20% 이상 증가

사업유지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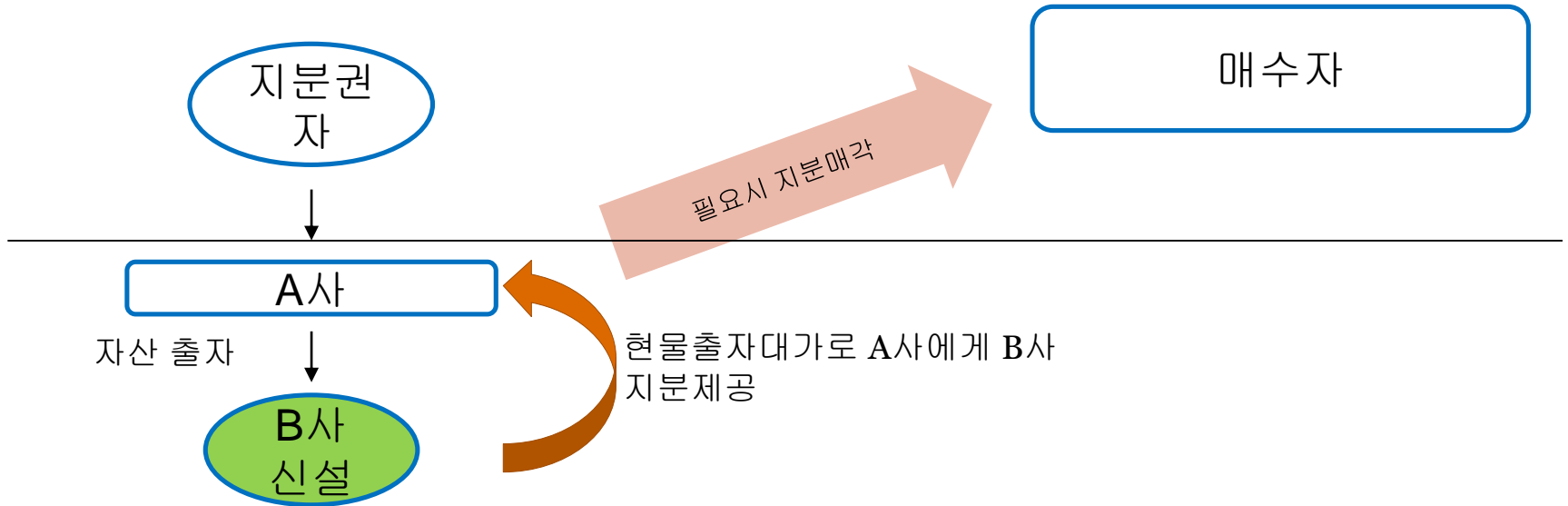
사업양수도/자산양수도



절차	이슈
B1사 현금출자로 설립 A사와 B1사간 사업양수도/자산양수도계약서 A사 IRC(사업목적변경)/ERC 변경	법인세법상 양도대상자산 및 부채 산정 및 양도대금평가액; 법인세법상 영업권 평가; A사 관할공단위원회의 사업목적 축소 허가
B1사 사업목적추가시 ERC 및 IRC발급	사업양도시 사업목적이 A사로부터 B사로 양도됨
양도대상자산의 이전(필요시 세관조사)	수입통관재화의 수입목적변경 및 세관조사; 면제된 수입관세는 사후추징; 매출부가세면제여부(양도자), 매입부가세공제(양수자); 매도자의 자산양도차익발생

사업유지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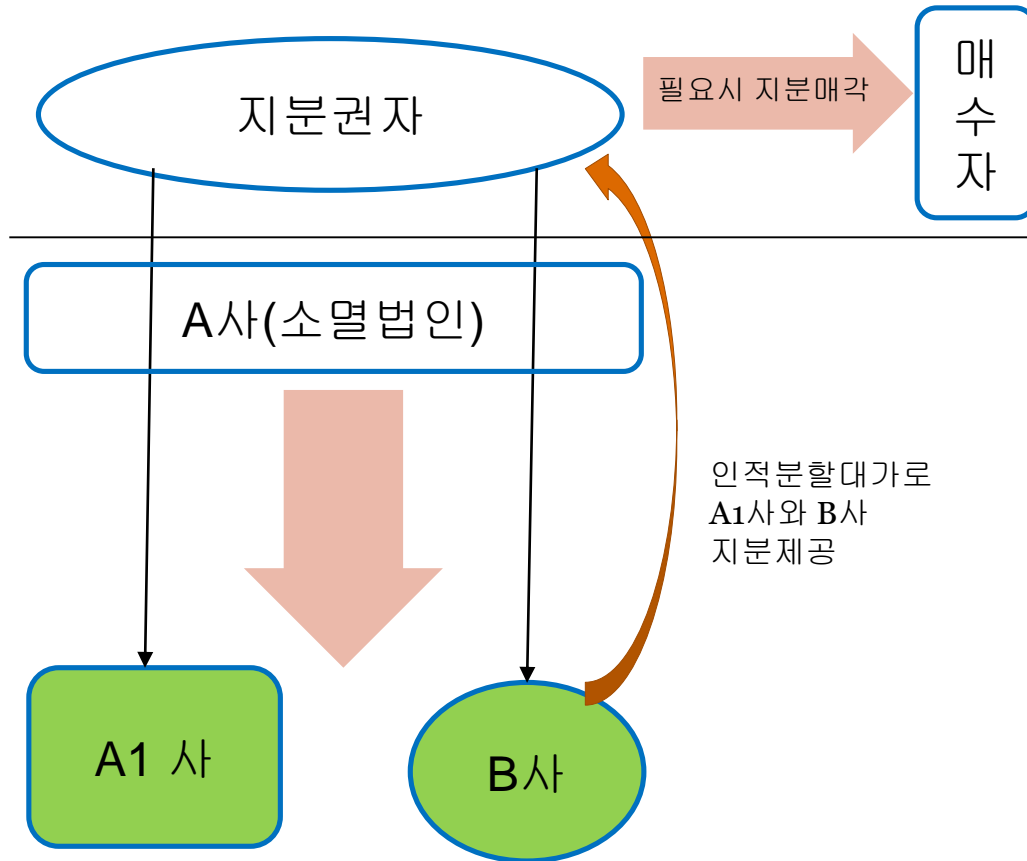
현물출자



절차	이슈
B사 설립투자자 출자결의 및 출자합의서; B사 IRC 및 ERC신청	현물출자대상자산 산정 및 출자자본금평가액(지분권자인 A사가 산정)
B사 ERC 및 IRC발급	A사 IRC의 증차요구 가능성
현물출자대상자산의 B사로 이전(세관조사)	A사 수입관세 사후추징, 현물출자자 A사의 매출부가세면제 및 출자자산양도차익발생
B사 지분매각 절차 개시 (현물출자 후 지분매각시에)	A사는 지분양도차익 법인세납부

사업유지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인적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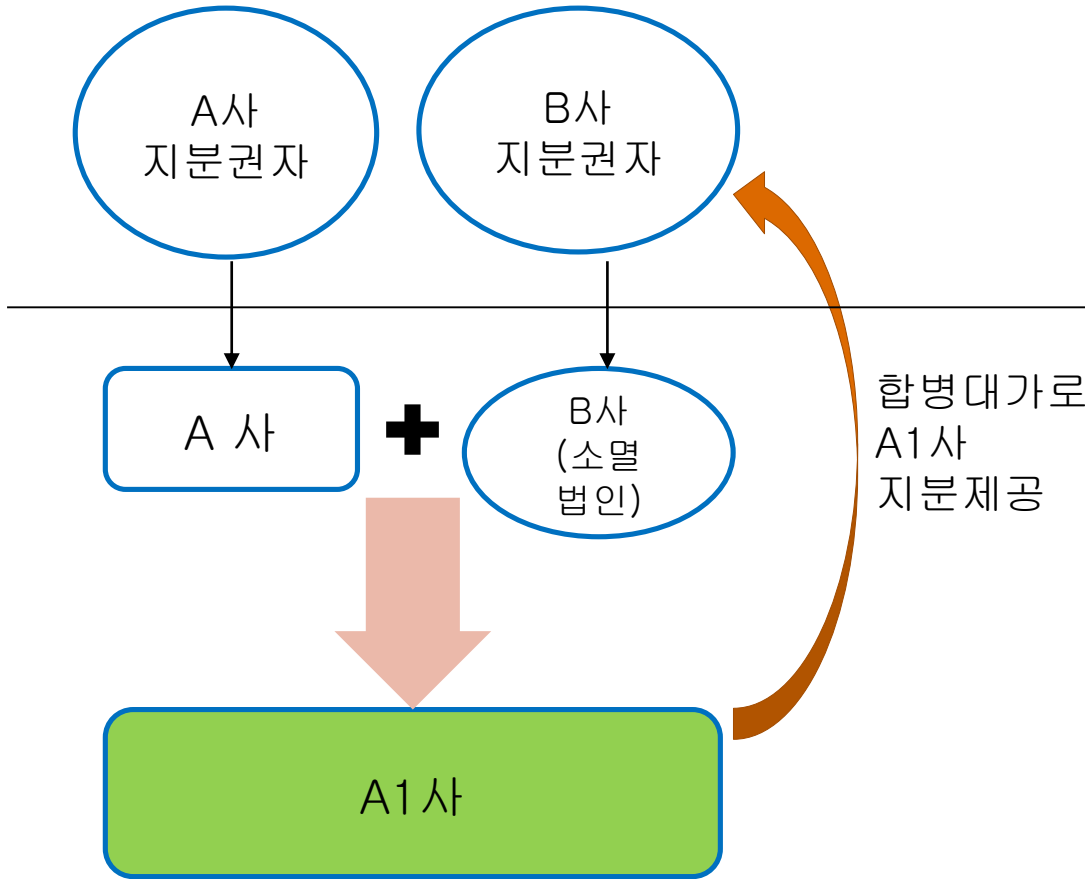


인적분할시 이슈사항

- 분할시 승계할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원칙
- 분할대가산정기준 및 수증자 증여의제여부
- A사의 지분권자가 분할후 법인들(A1사와 B사)에 대한 지분을 분할합의 필요
- 분할로 인한 A사의 자본감소절차 필요
- A1사 및 B사는 분할전 A사가 가진 법인세면제조건 승계가능
- 이월결손금 승계
- 공정가치로 분할대상자산을 이전하는 A사 입장에서 거래세영향(인적분할은 매출부가세, 법인세, 관세영향 검토필요)

사업유지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자매회사간 합병



합병시 이슈사항

- 합병비율 산정기준 및 수증자 증여의제여부
- 합병시 승계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평가의무
- 영업권/부의영업권 평가의무 및 A1사의 세무상손익반영필요
- 합병대가의 지분양도세 영향검토
- B사의 법인세면제조건 승계 및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 공정가치로 이전되는 승계대상자산의 거래세영향
- A1사의 출자금 증자금액 산정필요

사업유지시 구조조정방안의 비교

포괄승계의
정호

개별자산양도

양도자산 과세거래;거래의 신속처리;사업의 이전없음.

현물출자

사업의 승계없음;현물출자대상 양도자산 과세거래;현금거래없는 회사설립 및 자본거래가능

사업양수도 or 지분매각

사업의 승계;사업양수도된 양도자산 과세거래; 지분매각의 대상이 된 대상회사는 권리와 의무가 양도자로부터 양수자에게 포괄승계됨.

합병,분할

양도자산 비과세거래(양도자가 장부가거래시에만);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법인세감면승계; 거래절차의 복잡성

사업종결시 구조조정방안 설명

지분양도 및 세무이슈사항

절차	이슈사항
지분양수도계약서 체결	양수대가의 형식(현금 및 부채인수등); 지분양도세의 부담자 명기필요.
지분양도사실을 관할 DPI에 신고하고 승인받음	지분양도세 신고의무 개시일 논란
ERC변경신청서 접수 및 변경	매수자 명의 등재 완료
IRC 변경서류 접수 및 변경완료	매수자 명의 등재 완료
지분양도차익세금신고 (상술은 지분양도세 참조)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지분양도차익의 인정과세위험(실거래가와 무관하게)
조세조약상 과세면제신청서 제출	발효된 조세조약상 2022년도부터 매각지분율이 15%이상 지분거래는 베트남에 항상 과세권한 부과.
지분매각대금지급	매도자와 매수자 중 최소 일방당사자가 비거주자이면 매각대금은 Direct investment capital ACCT.로 우선 입금된 후 매도자에게 송금해야 함.

사업종결시 구조조정방안의 설명

청산절차 및 이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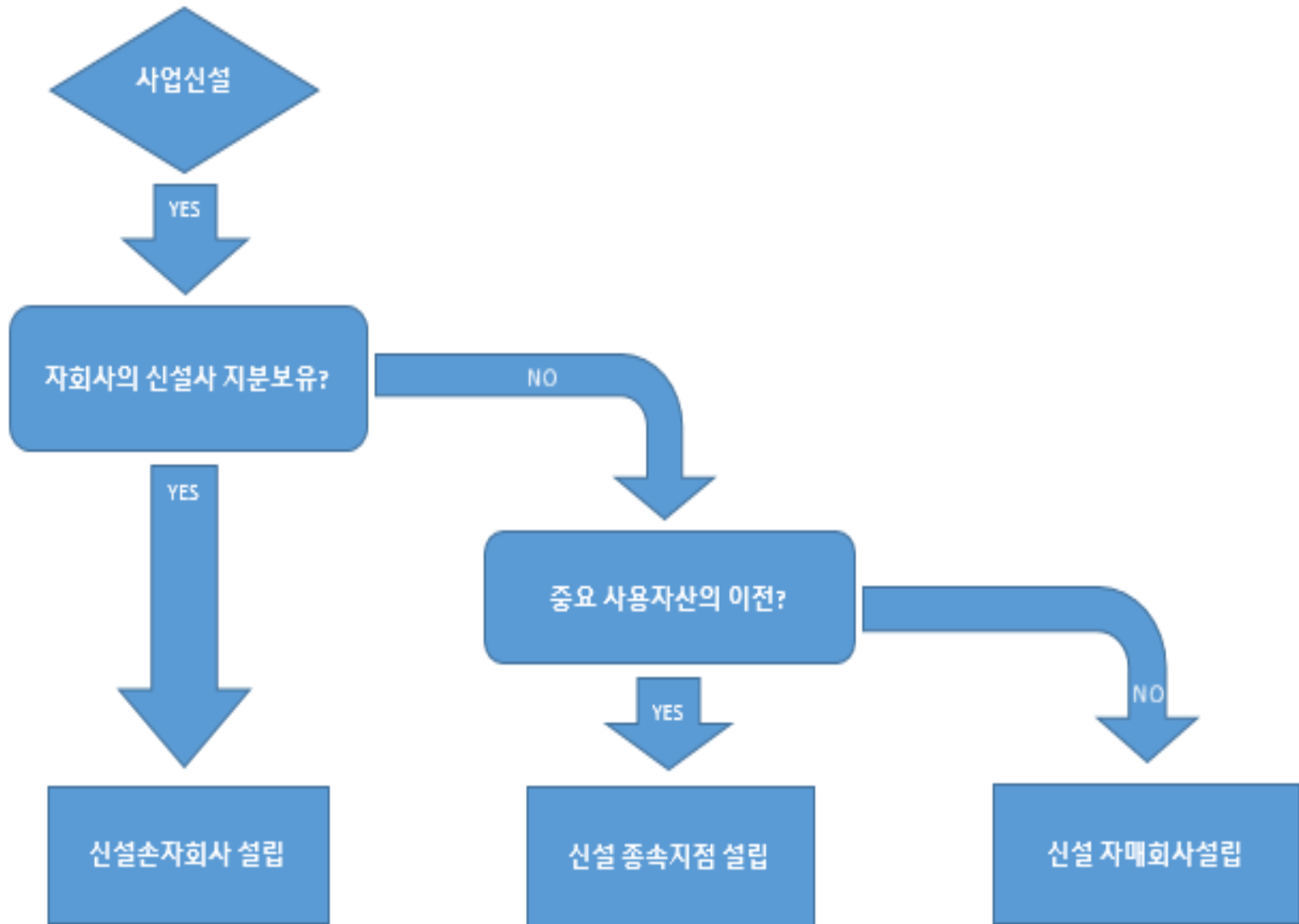
절차	이슈사항
회사해산 사원총회결의 결정서 작성	사원총회 출석사원의 3/4이상 찬성시
유관기관인 the Industrial Zone authority, 지역 DPI산하 Registration department, tax authority, custom office,종업원에 해산결의서를 제출하고 공고업무진행(해산결정서 후 7영업일내)	
회사의 자산처분 및 부채상환;해당시 임직원 미지급급여 지급	자산처분을 청산세무조사전에 수행해야 유리함. 자산처분 간주과세 위험
청산세무조사 수감, 청산세관조사 수감 및 공적사회보험공단 종결 결정문 수령 및 미납세금 및 보험료 납부; TAX CODE폐쇄	결정서 후 45일내 청산회계감사보고서, 청산법인세신고 및 납부 수행. 청산세무조사 수감 필수임.
거래은행 거래계좌 종결 및 잔액 투자자에게 송금	
회사 인감반납	
DPI에 회사청산 종결보고 수행	

사업종결시 구조조정방안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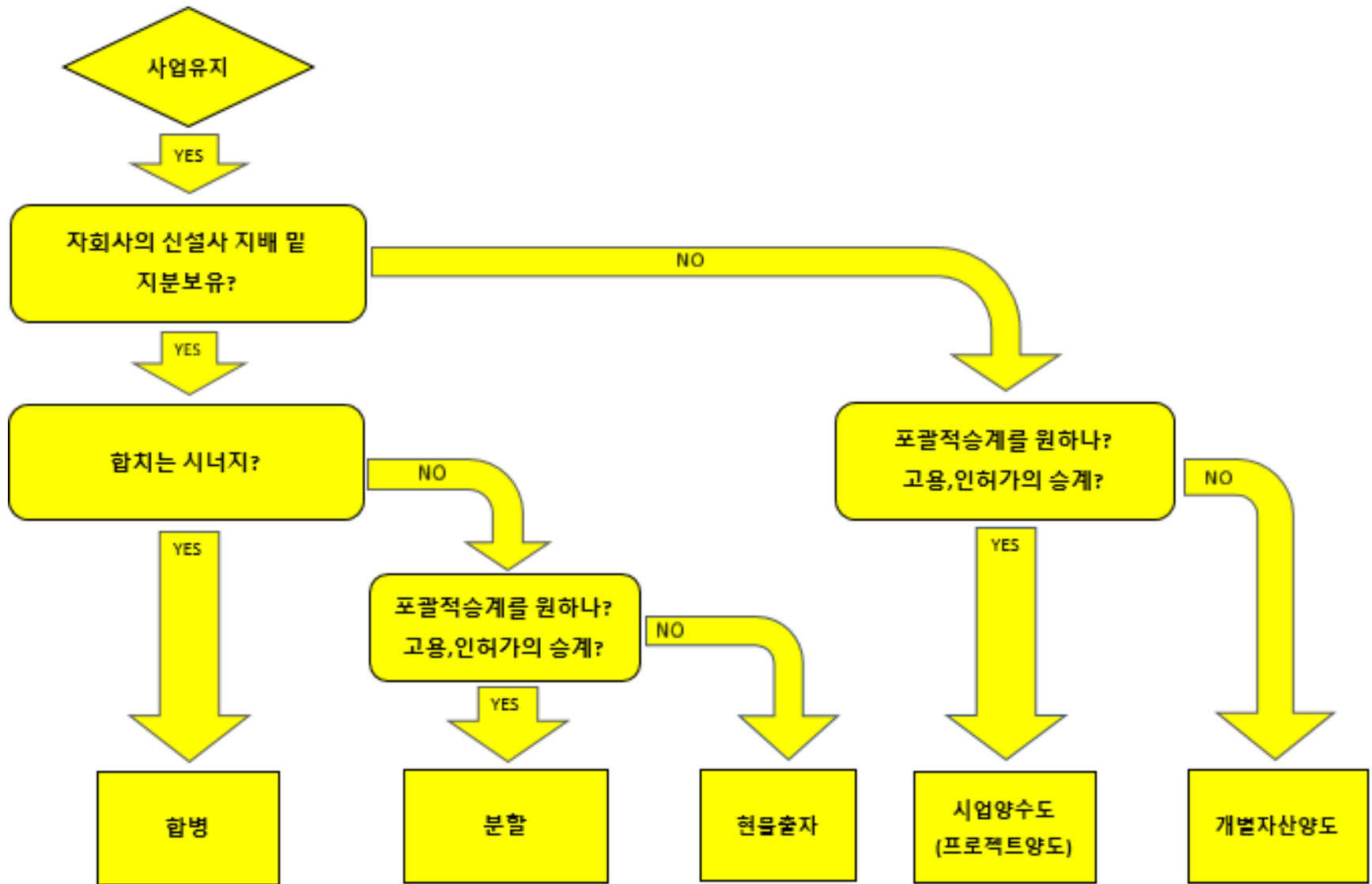
휴업절차 및 이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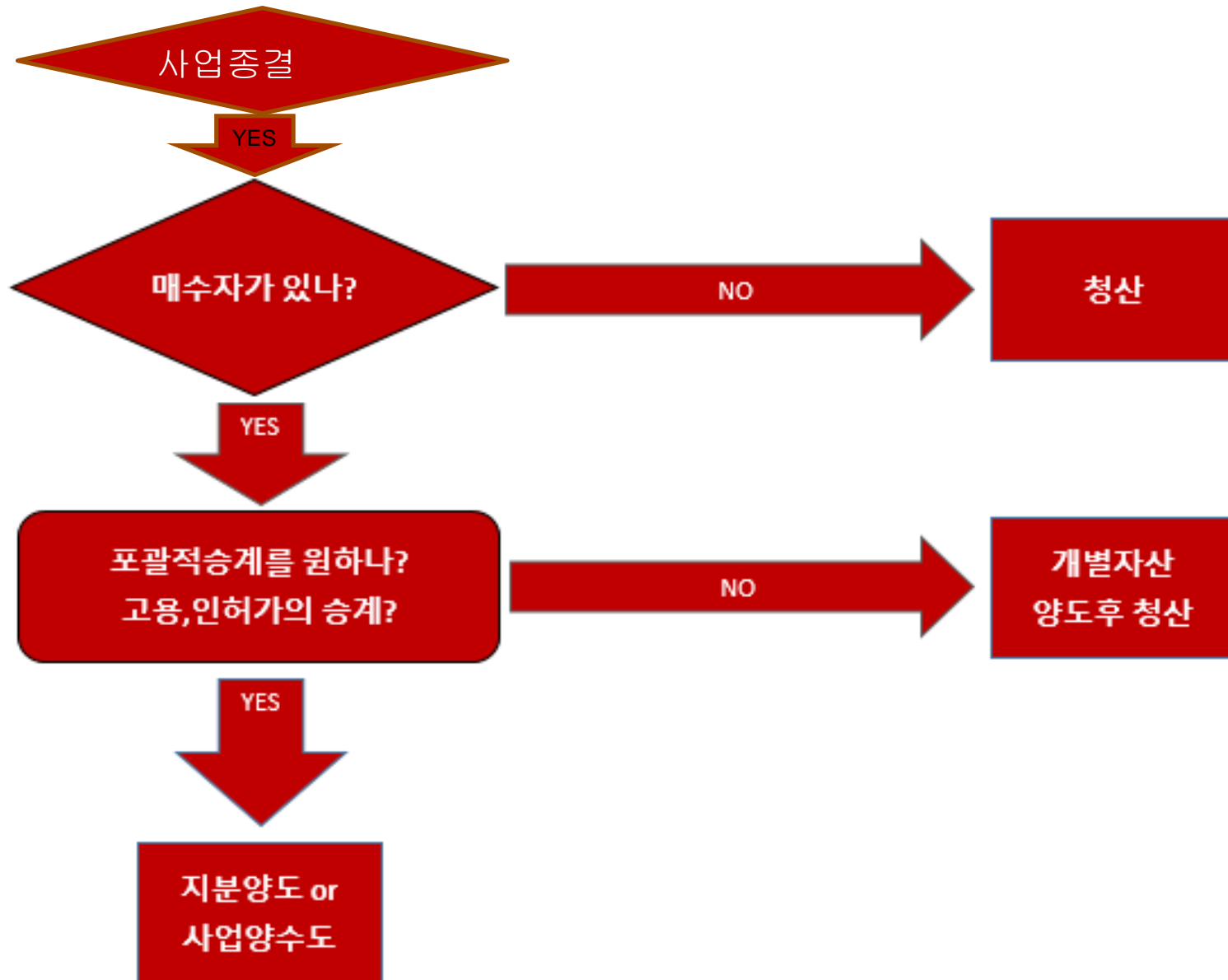
절차	이슈사항
휴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IRC상 회사목적사업기한내에서 휴업신청가능함. 신청전에 부가세환급 및 필요한 세무절차 재검토 필요.
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서 수령증 수령함.	
휴업허가증 수령	세금계산서 최종발행가능일
휴업중 세무신고 의무 중단	매입부가세 공제불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불가함. 휴업허가증 수령년도까지 회계감사 및 법인세 부가세 신고의무 존재함. 휴업신청한 익년도부터는 외부감사의무 중단, 법인세 및 정기세무신고 및 납부의무 중단

사업확장 시 구조조정 의사결정방안



사업유지시 구조조정 의사결정방안





세무조사 이슈

주요 세무조사 영역

- 조세면제혜택 해당여부
(예컨대, 조세면제 조건을 준수했나? 사업확장신규사업이 존재하나?)
- 업무관련성 검토
(예컨대, 손금의 업무관련성, 서비스구매계약을 통해 실제로 수령한 산출물과 회사의 업무와의 관련성 확인)
- 개인소득세
(예컨대, 복리후생비의 과세여부, 회사비용의 개인 전도금을 통한 집행 후 회사미상환의 개인소득 대상여부, 본사 출장자의 개인소득세 과세, 한국내 수령소득에 대한 베트남내 합산신고)
- 이전가격 과세제도(비교가능 동종회사의 업종 평균이익율 적정성)
- 외국인계약자세(과세권 면제여부, 적용세율, 조세조약 적용가능여부)
- 부가세(매입부가세환급사유 및 조건 검토, 수출과 국내매출 겸용시 매입부가세 안분근거)

세무조사 이슈

회사의 대응방안

- 세무신고의 적법한 작성 및 적기납부
- 세법 규정의 변경시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세무진단을 수행
- 검토/세무진단 수행 후 회사의 관련규정 및 처리지침 변경실행
- 조세조약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 면제가능성 검토(예컨대, 지분양도소득세의 과세권 면제사례, 단순 수입재화 판매업자에 대한 FCT 비과세)
- 세무조사전 증빙서류의 사전준비 필수
- 조세불복절차의 가능성 검토

지분양도세(CAPT)

- 매각자가 해외소재한 외국법인이면 베트남 대상회사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매각가에서 지분양도세(이하 “CAPT”라 함)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
- 지분양도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양도거래승인 후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함.
- 유가증권의 양도시에는 매각가의 0.1%의 인정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됨.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의 지분(주식이 아님)을 양도시 발생한 소득은 20%의 법인세가 부과됨.
- 과세표준은 매각가액-최초 매각의 경우엔 최초 법정자본금 출자액 또는 원시취득 금액-매각부대비용임.

대상회사 매도자	매각대상회사가 LLC(유한책임회사)	비공개 JSC(주식회사)	공개 JSC(주식회사)	매각대상회사의 원천징수의무여부
외국인 개인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도가액의 0.1%	매도가액의 0.1%	원천징수의무자
내국인개인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도가액의 0.1%	매도가액의 0.1%	원천징수의무자
외국소재 회사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도가액의 0.1%	원천징수의무자
내국인 회사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매각차익의 20%(현행법인세율)	원천징수없음.

세무조사 이슈

조세불복절차



(*)행정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는 행정부에 대한 불복절차와 무관하게 또는 중복되게 진행될 수 있음.

서우회계법인베트남 소개

서우는 베트남 내 조세/회계자문, **재무컨설팅, 회계감사 및 HR서비스**를 전문으로 수행하고자 전문가적 실무경험을 축적한 한국회계사들과 베트남 회계사들이 50여명의 현지 전문가들과 활동하고 있는 Leading 중견회계법인입니다. 베트남 pwc베트남에서 장기근속한 조성룡 대표회계사 및 Deloitte 베트남에 근속한 최준회계사, pwc베트남에 근속한 김형준회계사를 중심으로 베트남투자 및 진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노이 본점(참빛빌딩 10층) 및 Saigon지점(CJ 빌딩 3층)에 각각 위치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회계사

(서우회계법인베트남 대표, 한국/베트남 CPA)

Tel: 024-3776-7050

Mobile Phone: +84 98 548 7377

Email: csrgs@seouvietnam.com

주소: 참빛빌딩 10층, 117 Tran Duy Hung, Hanoi City

김형준 회계사

(호치민 지점장, 한국 CPA)

Tel: 028-3636-4671

Mobile Phone: +84 90 247 7335

Email: kimhj@seouvietnam.com

주소: CJ빌딩 3층, 6 Le Thanh Ton, HCM City

최준 회계사

(호치민지점, 한국/베트남 CPA)

Tel: 028-3636-4671

Mobile Phone: +84 813 767 067

Email: junchoi@seouvietnam.com

주소: CJ빌딩 3층, 6 Le Thanh Ton, HCM City